

별도건조검사(제11조제2항 관련)

1. 선체

가. 입거(入渠)되거나 상가(上架)된 상태에서 선체의 두께를 측정하고 압력시험을 실시한다.

나. 압력시험은 수압시험이나 기밀시험의 방법으로 하고, 다음에 따라 확인한다.

- 1) 압력시험의 범위는 강력갑판 아래의 선체, 선루 또는 상갑판 위의 첫째 갑판실로 하며 반드시 선박검사관(대행검사기관이 대행하는 경우 선박검사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입회하여야 한다.
- 2) 물높이나 압력을 확인하고, 물이나 공기가 새지 아니하는지 확인한다.
- 3) 압력이 걸린 상태에서 부재(部材)가 변형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변형이 있는 경우에는 수정 후 보강한다.
- 4) 선체 각 부에 대한 수압시험은 다음의 방법으로 한다.

항 목	수압시험의 기준
이중저	정판부터 공기관 상단까지 물높이에 따른 압력과 정판부터 격벽갑판까지의 물높이에 따른 압력 중에 큰 것에 상당하는 압력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여객선 외의 선박의 선수창(물탱크나 유탱크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만재흡수선까지의 물높이에 따른 압력과 선수 격벽의 높이의 3분의 2까지의 물높이에 따른 압력 중 큰 것에 상당하는 압력. 다만, 그 수선 이상의 부분은 호스 내의 압력이 2bar [2 kgf/cm ²] 이상인 사수에 따른 압력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여객선의 선수창	한계선까지의 압력 정도의 압력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여객선의 수밀 격벽(물이 통과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칸막이벽)의 수밀문(물이 통과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문)	호스 내의 압력이 2 bar [2 kgf/cm ²] 이상인 사수에 따른 압력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여객선 외의 선박의 수밀 격벽의 수밀문	호스 내의 압력이 2 bar [2 kgf/cm ²] 이상인 사수에 따른 압력
선미창(물탱크나 유탱크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및 선미관구획실	만재흡수선까지의 물높이에 따른 압력에 상당하는 압력. 다만, 만재흡수선 이상의 부분은 호스 내의 압력이 2 bar [2 kgf/cm ²] 이상인 사수에 따른 압력
물탱크나 유탱크로 사용하는 선수창 또는 선미창	정판부터 다음 위치까지의 물높이에 따른 압력 중 가장 큰 것에 상당하는 압력 가) 넘침관의 상단 나) 만재흡수선 다) 선박 깊이의 상부기점으로부터 정판까지의 수직 거리의 3분의 2를 정판부터
디프탱크	

	상방으로 수직으로 측정한 높이
축로	호스 내의 압력이 2 bar [2 kgf/cm ²] 이상인 사수에 따른 압력
그 밖의 수밀통로(물이 통과하는 것을 막는 통로)	
제1급 폐쇄장치를 설치한 선루단격벽의 출입구	
수밀폐쇄장치(물이 통과하는 것을 막는 폐쇄장치)를 갖춘 갑판구(창구를 포함한다)	
현문, 재화문 및 현창	
유조선 및 위험물산적운송선의 화물 유 탱크	정판부터 창구 정부까지의 물높이에 따른 압력에 상당하는 압력
펌프실과 겸용하지 아니하는 코퍼댐	정판부터 창구 정부까지의 물높이에 따른 압력에 상당하는 압력
펌프실과 겸용하는 코퍼댐	호스 내 압력 2 bar [2 kgf/cm ²] 이상의 사수 압력
위험물 외의 가연성 액체를 운송하는 액체화학품산적운송선 및 액화가스물질운송선의 탱크	정판부터 창구 정부까지의 물높이에 따른 압력에 상당하는 압력

5) 4)에 따른 수압시험 대신에 다음의 기밀시험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선박마다 기밀시험을 희망하는 부위, 시험압력, 시험방법, 사용할 압력계의 종류, 검사예정일자 등을 기재한 기밀시험방안서를 받아 사전 검토 후 실시하고, 현장 입회시 성적이 불량하거나 사전조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4)에 따른 수압시험을 실시한다.

- 가) 기밀시험의 압력은 0.2bar[0.2kgf/cm²]로 한다.
- 나) 시험압력은 U자형 게이지나 2개의 원형지시압력계로 확인한다.
- 다) 누설개소의 압력은 검지액(檢知液)을 발라 확인한다.
- 라) 현장 입회 전에 조선소로 하여금 사전확인을 충분히 하게 하고 누설개소가 발견되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게 한다.

다. 타를 들어 올리거나 빼낸 상태에서 베어링 간극을 확인한다.

라. 수밀문·방화문 등 폐쇄장치의 효력시험

2. 기관

가. 내연기관은 전부 개방된 상태를 확인한다.

나. 프로펠러축계를 빼내어 축지름 측정, 비파괴시험 및 축과 지면재와의 틈을 확인한다.

다. 보일러와 압력용기는 개방된 상태를 확인한다.

라. 보조기관은 개방된 상태를 확인한다.

마. 보기의 개방된 상태와 관장치의 내부를 확인한다.

3. 배수설비

가. 펌프 등 배수설비의 개방된 상태를 확인한다.

나. 최고항해흘수선 이하에서 배 밖으로 통하는 밸브 및 콕의 개방상태를 확인

한다.

다. 효력시험을 실시한다.

4. 조타, 계선 및 양묘설비

가. 닻·닻쇠사슬 또는 로프와 계선용 로프를 진열된 상태에서 치수를 확인한다.

나. 효력시험을 실시한다.

5. 전기설비

절연저항시험과 효력시험을 실시한다.

6. 만재흡수선(해당 선박만 검사한다)

만재흡수선 지정요건을 확인하고 표시상태를 확인한다.